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0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1호의 위원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분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 ----- ----- ----- ----- ----- -----.</p>
<p>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u>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u>를 둔다.</p>	<p>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 ----- -- <u>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한다.</u></p>

1.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

<삭 제>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

<삭 제>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공무원 1명

<삭 제>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1호의 위원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이찬영
연 락 처	2627-119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23.] (일부개정) 201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 2010.11.23>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10.11.23>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0.11.23>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1.23>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0.11.23>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0.11.23>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신설 2010.11.23>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04.18, 2010.11.23>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0.11.23>
2.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0.11.23>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10.11.23>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1.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 <개정 2010.11.23>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 <개정 2010.11.23>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개정 2010.11.23>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개정 2010.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1.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1.23>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8, 2010.11.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0.11.23>

2. 보조금 신청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0.11.23>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10.11.23>

나.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0.11.23>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0.11.23>

라.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개정 2010.11.23>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1.23>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1.23>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0.11.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23>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0.11.23>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1.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10.11.23>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1.23>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3>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0.11.23>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0.11.23>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0.11.23>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0.11.23>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11.23>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23>

부칙(제369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4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제627호, 2010.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법률 제16848호(201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